



서울특별시 중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신당제10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·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89호(2006.05.18.)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·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07-55호(2007.06.28.)로 정비구역 변경·결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36번지 일대 신당제10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,
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(정비구역등 해제)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.

가. 구역해제 개요

- (1) 구역명칭 : 신당제10주택재개발정비구역
- (2) 위치(면적) : 중구 신당동 236번지 일대(43,039.1㎡)
- (3) 해제사유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5호
(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)규정에 의거 해제

나. 공람 개요

- (1) 공람기간 : 2015.6.2. ~ 2015.7.3.
- (2) 공람내용 : 신당제10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
- (3) 공람의견 제출 : 중구청 주택과(☎3396-5723)
- (4) 공고방법 :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

붙임 : 1. 공람·공고문(안) 1부.
2. 공람의견서 1부. 끝.

